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3.13.)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승]

목 차

1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3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16
4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7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8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9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무상 사용 동의안-----	46
10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5.

나. 제 출 자 :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 이홍희 · 김향란 · 박수자·신재화·이재운·
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용어 정의 추가 (안 제2조 3호)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등 지원(안 제9조 3항)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교통과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2. 14. ~ 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 가. 「국가보안법」 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 나. 「형법」 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 5) 교통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9. 2. 25.

나. 제 출 자 : 김종두 의원 대표발의

(김종두 · 이홍희 · 김향란 · 박수자·신재화·이재운·
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제정이유

○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병역명문가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정함 (안 제6조)

-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2)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 3) 보건소 진료비
- 4) 문화예술 관람권 매년 4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2. 14. ~ 2.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

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시행 2017. 11. 7.] [병무청훈령 제1482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대상 등) 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병무청장은 선정기준 등을 명시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명문가 신청 및 선정

제4조(병역명문가 신청) ①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신청기간 중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한 병역명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은 해당 부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한 복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은 국가보훈처 등 국

가기관이 인정하여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접수증(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기재하고, 제2조의2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사항 확인 지연 등으로 당해 년도에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가문은 다음 년도 선정대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계획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한 때에는 명문가 친족 계보도(별표 1),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별지제5호서식),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별지제4호서식)등을 매년 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결과 안내) 지방병무청장은 신청가문 중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와 표창을 위한 심사절차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분장)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병역명문가 신청서의 접수·확인

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결과보고 등 관련 문서 관리

제10조(문서 관리) 지방병무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인별 병적조회(확인)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전산정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문별 이행자, 우대기관 및 행사 참여 희망자 등을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실 선임사무관이 된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표창 심사 기준
2. 삭제 <'08.12.12>
3. 표창대상가문의 선정
4. 기타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여성의 군복무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표창

제15조(주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부포상을 추진한다.

제16조(표창 및 부상금) ① 병역명문가 표창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 상: 대통령상
2. 금 상: 국무총리상
3. 은 상: 국방부장관상
4. 동 상: 병무청장상

② 삭제 <'08.12.12>

③ 제1항에 따른 표창대상 명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선양 및 홍보

제17조(병역명문가의 전당 운영)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의 전당"을 개설하고,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연도별로 게시하고, 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06.10.12>

제18조(병역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명문가증발급) ①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병역명문가증서(별지 제6호서식) 및 병역명문가증(별표 2)을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병역명문가증 발급(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 재발급을 원할 경우 병역명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영문증서(별지 제6호의2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취업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하고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별지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① 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홍보) 혁신행정담당관은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 홍보를 주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현수막 게시 등 지방청 자체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발전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 「관광진흥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 2017. 9. 19] [법률 제14895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 면제)
 5. 경남i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11. 「주민등록법」 상 25세 미만 미혼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거창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이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하는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
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실험·검사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사랑상품권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상품권 종류와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4조)
 - 1) 5천원권, 1만원권
 - 2) 발행일부터 5년 유효함
- 다. 가맹점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판매대행점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마. 환전 청구 및 환전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1) 환전한도 :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바. 할인판매,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제12조)

- 1) 상품권 금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개인에게만 연간 4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판매
 - 2) 추가 할인 판매 :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상품권 금액 10퍼센트 이내, 이용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
- 사.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정함(안 제 13조·제14조)
- 아. 환전되지 않은 상품권의 귀속, 우대한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28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2.~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전부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

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는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제6조 3항과 동조 5항 규정 및 제11조와 제14조의 상충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용추계서의 추계결과 1차년도와 차기년도 이후의 비용 차이,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등의 명확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7. 01. 시행)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근거없는 부담규정 등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제25조)
 - 1) 과태료, 보고·검사 규정 삭제
 - 2) 과태료 관련 별지서식 삭제
- 나. 장려금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11조)
- 다. 폐소화기 배출기준 신설(안 별표 5)

종별		규격	처리비
그 밖의 폐기물	폐소화기	3.4킬로그램 이상	4,000
		3.4킬로그램 미만	3,000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 10.~1.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7. 7. 01. 시행) 개정으로 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소화기의 수거근거를 마련하여 폭발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

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3의2.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1의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4.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의5.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5. 1. 20.>
- 3. 제25조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0. 7. 23.>
-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5. 7. 20.>
- 4. 삭제 <2010. 7. 23.>
-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07. 8. 3.>
-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 분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

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6. 7. 21.]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2.(생략)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1-02-00 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91-03-00 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

91-04-00 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

91-05-00 고철 및 금속캔류

91-06-01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

91-06-02 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

91-06-03 폐합성고무류

91-07-01 유리병

91-07-02 폐유리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

91-09-00 폐전기전자제품

91-10 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91-10-02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

91-10-0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

91-11-00 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

91-12-00 폐타일 및 도자기류

91-13-00 폐형광등

91-14-00 폐전지류

91-15-00 연탄재

91-16-00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

91-17-00 식물성 잔재물

91-18-01 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

91-18-02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91-19-00 폐소화기류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9.>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의2. 삭제 <2017. 10. 19.>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

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

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4. 1. 17.>

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1.>

⑤ 삭제 <2017. 10. 19.>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

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4.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 50퍼센트 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 별표 6)
 - 1) 수거식 화장실
 - 가) 10리터기준 137원⇒189원 : 52원 인상, 인상률 37.9퍼센트
 - 2) 개인하수처리시설
 - 가)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16,070원⇒18,225원 : 2,155원 인상, 인상률 13.4퍼센트
 - 나) 100리터마다 초과요금 1,161원⇒1,300원 : 139원 인상, 인상률 11.9퍼센트
- 나. 법령 근거 없이 가산금 징수규정 삭제(안 제24조제6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 50퍼센트 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하수도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 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 1) 킬로리터당 16,000원 ⇒ 18,000원
 - 2) 2,000원 인상, 인상률 12.5퍼센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제30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8.~2019. 1. 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것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타법개정]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협조합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재기재사항인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
- 다.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삭제(안 제5장)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8.~2. 1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528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개정이유

-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뜻을 밝혀 규정함(안 제2조)
 - 1)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
- 나. 사업 대상자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일 것
 - 2) 매년 군수가 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 생산할 것
 - 3)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 다. 사업 대상자 신청과 심의를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지역농협과 협약체결, 그 지역농협의 업무를 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이자등의 정산절차를 정함(안 제8조)
- 바. 사업의 재원을 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백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24.~11. 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8. 12. 31.>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3조(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9조(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융자지원 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2.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④ (생략)

[거창소방서 **웅양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제안이유

- 거창군 북부지역(웅양면, 주상면, 고제면)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소방수혜 사각지대로 재난의 신속대응이 어려워 웅양권역에 신설 하고자 하는 경상남도(거창소방서)에 「거창소방서 웅양19지역대」 신축부지 사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거창소방서 웅양19지역대
- 소재지 :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 등 3필지
- 건축규모 : 연면적 779.12㎡, 2층 1동(부지 2,076㎡)

구분	면적	층별	비고
1층	481.64㎡	사무실, 차고, 창고, 감염관리실	
2층	297.48㎡	식당, 대기실, 체력단련실, 의소대사무실	

- 소방력 : 인원 10명, 차량 2대

나. 지원계획

○ 재산현황

(단위:㎡,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용도지역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076		
토지	웅양면 노현리 112	답	349	16,054	제1종일반 주거지역
	웅양면 노현리 113	답	1,094	48,683	
	웅양면 노현리 114	답	633	29,118	

○ 사용면적 : 2,076㎡(전체면적)

○ 사 용 료 : 무상사용

- 웅양면 노현리 112의 2필지 부지는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며 무상사용 가능 (계약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 사용기간 :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가 소방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폐쇄하기 전까지(사용허가는 5년 단위로 갱신함)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 영구시설물 축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지사)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시 축조 가능

⇒ 동의 후 상호 합의서(붙임2) 체결 및 사용수익 허가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3. 추진경과

- 2017. 2월 : 웅양119지역대 건립부지 지원 검토보고
- 2017. 4월 : 관련부서(도시건축과) 적합성 검토
- 2017. 6월 : 군·거창소방서·웅양면 합동 현장 확인
- 2017. 9월 : 부지 매입비 확보(2회 추경: 3억원)

-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18. 2월 : 부지매입 완료
- 2019. 1월 : 부지 무상사용 협조요청(도 소방행정과)
- 2019. 2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4. 향후일정

- 거창군 ⇔ 경상남도 토지사용 협약체결 : 2019. 3.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거창군 ⇒ 경상남도) : 2019. 3.
- 거창소방서 용양119지역대 신축 : 2019. 3. ~

5. 기대효과

- 원거리 지역의 체계적인 소방안전망 구축
-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서비스의 사각지역 해소
-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한 현장대응활동 체제 강화

6.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제(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참고자료 : 관내 119안전센터 설치 사례

관 서 명	위 치	부지 면적(m ²)	건축 연면적(m ²)	부지소유	사용료	관할구역
거창소방서 (119구조대)	대평리 1359-1	5,626	804	거창군 (1994.4.26.)	무상	군 전체
대평119 안전센터	대평리 1359-1	5,626	198.52	거창군 (1994.4.26.)	“	거창읍·남상·신원· 주상·용양면일원
위천119 안전센터	장기리 509	1,633	393	거창군 (2006.9.22.)	“	위천·북상·마리· 고제면일원
가조119 안전센터	마상리 467-6	1,026	212	거창군 (2004.1.6.)	“	가조·가북·남하면 일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방수혜 사각지대인 거창군 북부지역(웅양면,주상면,고제면)에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거리 지역의 체계적인 소방안전망 구축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창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거창소방서 웅양119지구대의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

5.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 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2. 25.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2. 25.

2. 제안이유

○ 주택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위탁
- 나. 위탁기간 : 2019. 4월 ~ 2021.12월 (3년간)
- 다. 사업비 : 776백만원/년(국388.2(50%), 도116.4(20%), 군271.7(30%))
 - 슬레이트 처리 : 510.7백만원(국255.3, 도76.6, 군178.7)
 - 지붕개량 지원 : 265.7백만원(국132.8, 도39.8, 군93)
- 라. 사업량 : 슬레이트 주택 240동(철거 152동 및 지붕개량 88동)
- 마. 위탁비용 : 62.8백만원/년(사업비의 8%)
- 바. 위탁범위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 위탁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업체 선정, 계약체결
- 슬레이트, 지붕개량 면적조사 수행
- 슬레이트 처리, 지붕설치 등 공사현장 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

사. 그간 추진현황

- 슬레이트 시설물 실태조사(2013년)

(단위: 동)

합계	주택	공장	창고	축사	시설	기타
10,784	7,914	55	1,564	917	61	273

○ 그간 추진실적

구분	철거현황				전체슬레이트
	철거비율(%)	합계(누적)	환경과	도시건축과	
2013년	1.3	138동	129동	9동	10,784동
2014년	2.8	300동	100동	62동	10,622동
2015년	5.4	562동	199동	63동	10,360동
2016년	7.4	751동	136동	53동	10,171동
2017년	11.4	1,119동	368동	-	9,803동
2018년	12.5	1,349동	230동	-	9,435동

○ 그간 추진방법

- 2013년~2016년 : 한국환경공단 위탁 사업 추진
- 2017년 :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 2018년 : 시설비로 업체 입찰 직접 수행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2.28)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
(17년부터 시군별로 직접수행, 민간위탁, 민간보조 3가지 방법으로 사업추진)

○ 2019년 민간위탁 추진배경

- '17년부터 도시건축과 등 타부서 연계사업을 환경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업량 증가, 범위확대, 석면관리 안정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업무추진 애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권고(2018.11)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

⇒ 민간경상보조(307-02) ⇒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예산의 변경사용

아. 운영계획(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 업체선정 : 공개입찰(1개 업체)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후 선정

○ 참가자격

-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의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위탁업체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절대평가(40점), 상대평가(60점)
 -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실적평가(30점), 경영상태(10점)
 -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심의위원 평가, 상대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평가산식에 의해 담당부서 평가
- 상대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

○ 위탁기간 : 위탁업체와 계약일로부터 ~ 2021. 12월(3년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2013~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였으나,
-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위탁 규정 삭제로 직접수행 추진한 결과, 현장 감독 등 업무수행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9.1 환경부)

다. 향후일정

- 예산의 변경사용 : 2019. 4월중
-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19. 3월말 ~ 4월중
- 업체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 2019. 4월말
- 위수탁 사업추진 및 정산 : 2019. 5. 1. ~ 2019. 12. 31.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사업비의 8%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17년 2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한국환경공단 위탁 규정 폐지로 지자체에서 직접처리 하던 것을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해체,제거)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19. 2. 4]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 9. 13, 일부개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2.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8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